

학칙 개정 내용 및 신·구조문 대비표

I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

1. 개정사유

가.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를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교원의 교수시간 조항 신설

II 신·구조문 대비표

에 서	으 로	비 고
(신설)	제68조 (교원의 교수시간) 전임교원의 교수시간 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	조 신설
	부 칙 <2023. 8. 29> (1)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) 제68조 신설	부칙 신설